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351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임미애 · 김남근 · 김남희
김동아 · 김영진 · 김 윤
박지원 · 손 솔 · 신장식
안태준 · 윤준병 · 윤후덕
이광희 · 이기현 · 이수진
이연희 · 이용선 · 조계원
황명선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특정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상 이

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설령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승소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심판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참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신뢰 확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1조, 제46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요구”를 “요구 및 안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청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결 참여 위원 명단

제4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안내받은 경우도 같다.

⑦ 제6항의 경우 해당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결의 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u>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p> <p>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u> <u>성별을 고려하여</u>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p> <p>1. ~ 4. (생략)</p> <p>5. <u>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⑤ ~ ⑦ (생략)</p> | <p>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u> <u>경력이 있는 사람</u>----- ----- -----</p> <p>④ ----- ----- -----<u>성별을 고려하여 다</u> <u>음</u>----- -----<u>행정심판과</u> <u>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u> <u>풍부한 사람</u>----- -----</p> <p>1. ~ 4.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②
(생략)
<신설>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③ (생략)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
⑤ (생략)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
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
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및 안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거부처분이나 부
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
된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결과
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청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재결 참여 위원 명단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다. <후단 신설>

<신 설>

--. 제21조 제3항에 따라 행정
심판 청구 사실을 안내받은 경
우도 같다.

⑦ 제6항의 경우 해당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